

## 2021년도 대·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

대기업·공기업·중견기업(이하 주관기업)과 협력중소기업(이하 참여기업) 간 공급가치사슬 전체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『2021년도 대·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22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협력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,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
  -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
- (지원내용)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과 컨소시엄\*을 구성하고 주관기업·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다음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

지원분야	지원내용	범위
제품혁신	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* 신제품개발, 제품개선, 시제품 제작, 특허인증, 디자인 등	컨설팅/직접지원 *직접지원(컨설팅기반)
프로세스혁신	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* 제조혁신, 기술지도, 판로확대,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	
조직혁신	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* 경영전략, 현장개선, 환경·안전, 자문지도, 분임조활동 등	

\* 컨소시엄 : 주관기업(대·공·중견기업) + 수행기관(컨설팅기관) + 참여기업(중소기업)

\*\* 산업변화에 따른 업종별 혁신활동을 종합적 지원분야 변경('21년)

- (사업비 조성) 컨소시엄 단위로 주관기업 민간출연금(상생협력기금)에 따라 정부가 30%(중견기업 50%)이내 매칭하여 사업비 조성
  - \*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조성되며, 자부담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주관기업에서 전액 부담하여 사업 참여가능(중소기업 부담금 없음)

## 2. 지원대상

-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기업
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)
  -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(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)가 아닌 기업
    - \*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중인 기업,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,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, 유흥·향락업, 숙박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,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

## 3. 컨소시엄 구성

- 주관기업, 참여기업, 혁신활동을 지도·관리하는 수행기관으로 구성
  - 수행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    - \* 수행기관 :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위해 사전진단을 거쳐 제품 혁신, 프로세스혁신, 조직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, 협회, 단체

수행기관 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경영·제조·기술 분야 등 혁신활동 관련 유사 지원실적 보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담 인력 보유 기관</li></ul> <p>- 사전 진단결과, 지원과제의 적절성, 수행기관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미흡 시 선정평가에서 참여제한</p>
수행기관 참여제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)인 단체</li><li>○ 주관기업의 자회사 컨설팅 단체</li><li>○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,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단체</li><li>○ 전년도 컨소시엄 최종평가 결과 '미흡' 또는 '아주 미흡' 판정을 받은 컨소시엄의 수행기관</li></ul>

## 4. 지원기간

-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'21. 12월까지 (1년 이내)
  - 사업기간은 1년 단위 하되, 중장기 과제(~'23. 12월 이내)는 최대 3년 이내로 협약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'계속' 여부 평가

## 5. 지원분야 및 유형

□ (지원분야)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제품혁신, 프로세스혁신, 조직혁신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

○ 지원규모 : 중소기업 당 최대 1.5억원

- 혁신활동(제품, 프로세스, 조직)별 지원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

\* 직접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개선사항 지원을 우선하며, 직접지원 단독과제 신청 시 지원목적, 활용계획, 성과목표 등을 종합하여 지원여부 심의

○ 제품혁신 분야 :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

- 신제품 개발, 제품개선, 시제품 제작, 특허·인증, 디자인 개선 등

분야	지원내용	지원방법
신제품 개발	환경변화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	컨설팅 /직접지원
제품개선	기능성, 심미성, 편의성 등 소비자 중심의 제품개선 지원	
시제품 제작	신제품 및 아이디어 등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제반활동 지원	
특허·인증	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, 현지화에 따른 인증취득 지원	
디자인개선	디자인 분석, 브랜드 이미지 개선, 디자인 체계 등 구축지원	

○ 프로세스혁신 분야 :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

- 제조혁신, 기술지도, 물류·유통, 판로확대,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

분야	지원내용	지원방법
제조혁신	생산·품질·설비·원가관리 및 제조관련 프로세스 개선활동	컨설팅 /직접지원
기술지도	기술도입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코칭	
물류유통	공급망 구조변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 물류체계 개선 지원	
판로확대	국내외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분석, 홍보지원	
디지털 인프라 구축	공정자동화, 실시간모니터링, IT시스템(ERP, MES 등) 구축, 데이터 자동화 및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반 지원 등	

\* (판로확대)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수출 관련 활동 제반사항으로 적정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(단, 1회성 활동 및 관세, 물류비 등 직접지원 비용 제외)

- 조직혁신 분야 :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
  - 경영전략, 현장개선, 환경·안전, 자문지도, 분임조활동 등

분야	지원내용	지원방법
경영전략	경영전략, 인사·조직, 재무·회계, 기업서비스 등 경영전반	컨설팅 /직접지원
현장개선	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환경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적개선활동 등	
환경안전	산업안전보건, 현장안전지도, 환경·안전 인증취득 지원활동 등	
자문지도	특정(법률·노무, 식품·위생 등) 이슈사항에 대한 단기, 일회성 지원	
분임조 활동	조직 내 인적자원에 대한 자발적 개선활동 및 혁신과제 지원	

- (지원유형) 참여기업 시급한 개선과제를 목표로 1년 이내 단기과제, 현장 진단을 통해 지원분야별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활동의 3년 이내 과제(중장기과제)로 구분되며, 주관기업 지원계획에 따름
- 지원분야, 지원기간, 추진일정, 세부 지원사항, 지원횟수 등은 기업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,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  - 컨소시엄별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참여 선정 승인

## 6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

공고일	접수기한	
	1차	2차
2021. 2. 22.(월)	4. 9.(금)	5. 14.(금)

※ 컨소시엄 지원규모 등에 따라, 정부지원금은 1차에 모두 소진될 수 있으며, 공고된 일정 이외 추가공고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

-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이메일 접수 : [partnership@win-win.or.kr](mailto:partnership@win-win.or.kr)

○ 제출서류

구분	신청서류
공통	- 대.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신청서 1부 * 컨소시엄 세부 수행계획 엑셀파일 포함
주관기업	-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서 1부
참여기업	- 컨소시엄 참여기업(중소기업) 동의서 1부 - 참여기업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1부 -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
수행기관	- 수행기관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1부 - 수행기관 청렴서약서 1부 - 기타자료(컨설턴트 포트폴리오, 컨설턴트 등급기준 증빙 등)

**7. 사업 추진절차**



**8. 유의사항**

- 동 사업은 컨소시엄(대기업, 참여기업, 수행기관)으로 신청 및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, 중소기업 단독으로 신청은 불가
  - 혁신활동에 따른 참여기업 당 1억 5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, 총 사업비 내에서 지원과제별 규모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분배 가능
  - 컨소시엄 내 참여기업은 5개사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
    - 단, 사업비 자부담(주관기업 전액부담) 컨소시엄의 경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해 예외적용 가능
    - 「자문·지도」분야 단독 지원은 20개사 이상으로 구성
- \* 자문·지도 분야에 대한 컨소시엄은 정부지원금 불가

- 참여기업 사전 진단결과, 지원과제의 적절성, 성과확산성 등을 종합한 선정평가결과 미흡한 컨소시엄에 대해 참여제한 될 수 있음
  - 지원성과를 고려하여, 컨소시엄별 최소기준 민간출연금(3,000만원)
- 특수관계인<sup>1)</sup>의 경우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
- 참여기업은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는 불가

## 9. 문의처

- 전화 문의처

담당기관 (담당부서)		전 화
전담기관	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생산성지원부)	02-368-8437, 8722, 8450
주무부처	중소벤처기업부(상생협력정책과)	042-481-3981

- 홈페이지
  -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ms.go.kr>)
  -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win-win.or.kr>)

1)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,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